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(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) 제3항,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-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.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대주주 성명		㈜동부캐피탈
신용공여 규모		5,000,000,000원
거래조건		시작일 : 2008년 08월 22일 종료일 : 2009년 08월 22일
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금액	채권	-
	주식	-
대주주의 의결권 행사		-
기타		- 본 건은 ㈜동부캐피탈에 대출중인 50억원의 대출상환 기간이 2008년 08월 22일에 도래함에 따라 신용공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임. - 이사회 결의일 : 2008. 07. 30(수) - 대출조건 변경일 : 2008. 08. 22(금) [변경사항] 1. 대출기간 변경전 : 2007.08.22 ~ 2008.08.22 변경후 : 2008.08.22 ~ 2009.08.22 ⇒ 대출기간 1년 갱신. 2. 금리 변경전 : 年 7.42% 변경후 : 年 기준금리 + 1.44% ※기준금리:2008년8월21일 기준 A3-등급 CP30일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함.